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8.02.10.

[상담유형]

방문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선임급

소속 : 인사처

[상담 내용]

다음주에 내 생일인데 팀장과 동료들에게 거하게(35,000원) 식사대접해도 될까?

[상담 결과]

결과) 상황에 따라 법적용이 다르며, 가액기준 이내의 식사제공을 권장합니다

동료 사이에 시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제공은 청탁금지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액기준 초과하는 고가의 식사제공은 서로간의 부담, 위화감 조성 등 조직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회사에서는 기준가액 범위내의 간소한 식사제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기 불구하고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즉 근평기간 전후한 시기에 피평정자가 평정자에게, 감사/평가 등의 대상자가 감사/평가자에게 식사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되나 회의비 인당기준 등 다른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우리회사의 경우에는 기준가액 범위내의 간소한 식사제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 본 건의 경우에는 팀장님이 간소한 식사를 사시고, 생일자는 차 한 잔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 인]

2018.02.10

윤리경영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8.03.17

[상담유형]

전화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원급

소속 : 인사처

[상담 내용]

부당업무지시의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주세요

[상담 결과]

※ 『부당업무 지시』 정의 : 부당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 (행동강령) 부당지시의 의미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업무지시 또는 요구

○ 업무지시 범위

(구체적) 부당업무지시 범위

- | | |
|-------------------|----------------|
| ① 불합리한 내용, 방법 지시, | ② 지위남용(이용) 지시 |
| ③ 상사 개인업무 위양 지시, | ④ 상사 사적용무 지시 |
| ⑤ 개인복지 사용 제한 지시, | ⑥ 행동 자율성 제한 지시 |

[확 인]

2018.03.17

윤리경영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8.04.16

[상담유형]

방문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책임급

소속 : 신사업관리실

[상담 내용]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참석자 모두에게 언제나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결과]

[결과] 참석자가 수행하는 역할, 참석하는 거리에 따라 차등 가능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여기에서 일률적 제공이라 함은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발제자, 토론자, 일반 참석자 등)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일률적 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거리에 따라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금품등의 종류에는 음식물, 교통, 숙박 등의 편의가 포함되며 선물은 제외됩니다.

<음식물>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수수 허용

<교통, 숙박 등의 편의> 교통, 숙박 등 편의를 거리에 따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

<선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등'에는

교통, 숙박, 음식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품등만 포함

[결론] '통상적 범위'는 행사의 목적과 성격, 참석자 범위,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 인]

2018.04.19

윤리경영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7.05.30

[상담유형]

전화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원급

소속 : 연구소

[상담 내용]

결혼이나 돌잔치 후, 상사나 동료들에게 떡을 돌려도 되나요?

[상담 결과]

결혼이나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소속 직우너들에게 떡을 돌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 될 수 있습니다

[확 인]

2018.05.30

윤리경영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8.06.15

[상담유형]

전화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원급

소속 : 경영지원처

[상담 내용]

업무도 바쁜데 청렴교육을 전직원이 1년에 2시간씩 꼭 이수해야 하나요?

[상담 결과]

[결과] 공직자인 우리회사 임직원(계약직포함)은 법령에 의거 모두 연간 2시간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원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령의 내용 : 공공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기 청렴교육은 법령 필수사항일 뿐더러 교육학점(2학점), T/C 2시간, 청렴마일리지(2점)를 부여하며, 부서별/본부별 교육참여율은 KPI에 반영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확 인]

2018.06.15

윤리문화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8.07.05

[상담유형]

전화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책임급

소속 : 혁신성장전략실

[상담 내용]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상담 결과]

[결과]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32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개정 주요내용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행위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3.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신고방법 : 사전 서면 신고(사규 임직원윤리행동강령 별지5호 신고서식 활용)
단,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내에 신고(소명)

보충질문 :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없이 신고 및 반환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되므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지체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되므로 제공자는 제재대상임

[결론] 금품등 수수시에는 위의 신고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하여야 하겠습니까.

[확 인]

2018.07.05

윤리문화팀장 정상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8.08.02

[상담유형]

전화

[상담요청자] 성명 : 000

직급 : 주임급

소속 : 기술전략실

[상담 내용]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상담 결과]

[결과] 아닙니다.
공직자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금품등이 제공된 경우,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인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확 인] 2018.08.02

윤리문화팀장 정상인